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7
----------	------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8. 11. 최정순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8. 21.

다.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정책은 정치, 인권, 법·제도, 노동, 복지, 건강, 다문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내의 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은 서로 분산되고 중첩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

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2013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여성의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¹⁾은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²⁾는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나타남.
 - 특히 경제활동 참가, 소득 수준, 고위직 비율, 정치 참여 등 사회·정치적 권한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와 차별성이 높은 편이며, 이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 개인에게 집중되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점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³⁾
 - 이에 국내 출산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20. 8. 26)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⁴⁾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18년 기준)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6년 연속 최하위임(붙임.1).

1)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됨.

2) 성격차지수 혹은 젠더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내놓는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제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의 분야에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수치화한 지수임.

3)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4)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또한 OECD 29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한국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 유리천장(glass-ceiling)⁵⁾ 지수⁶⁾에서 8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성별임금격차(36.7%)와 여성 관리자 및 기업이사의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성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⁷⁾
- 「2019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붙임.2)」⁸⁾에 따르면, 서울시의 성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월평균 임금(334만원)의 63% 수준인 210만원에 불과해,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9년 36.7%)와 비슷한 수준이며,
 - 15세 이상의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71.9%)과 큰 차이가 나며, 월평균 147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이 남성(9.6%)보다 약 3배 높은 27.5%('18년 기준)로 나타남.
 - 또한 서울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1인 가구 중 25%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50%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 1인 가구는 33.3%가 200만원 미만, 66.6%는 300만원 미만으로 차이를 보임.

5) 1986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일반화된 유리천장이란 용어는 여성의 관리직 진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관리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위적인 장벽(invisible artificial barriers)’을 말함.

6) 여성의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긴 평점으로, 교육,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 임원 승진, 의회 진출, 유급 육아휴가 등에 대한 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 통계처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

7) 「Glass-Ceiling Index」, The Economist, 2019. 3. 8.

8) ‘2019년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환경, 복지, 정치·사회참여, 문화·정보, 안전 등 10개 부문 45개 영역, 424개 통계지표로 구성

- 일과 생활 균형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 가사 부담 비율은 여성이 70%로 나타났으며, 안전분야에서도 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50.6%로 남성(34.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회환경 구조 속에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과 공정하게 평가받고 평등하게 일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점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대상의 복지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이자 성주류화의 실현으로 변화함에 따라,⁹⁾ 2012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속·일상 속 성평등 문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주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최근에는 성평등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 하는 등의 성평등 노동환경 구현과 여성 안심환경 조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을 핵심목표로 하는 「3. 8 성평등 서울 추진계획」(붙임. 3)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시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범위가 복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예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여성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취지로 판단됨.

9)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회, 2016.

- 또한 여성과 성평등 추진을 위한 업무가 특정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¹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0. 8. 31 기준)발효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바, 구성 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활동시기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결과, 의견 없음.

10)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727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의자 : 최정순, 권영희, 채유미,
권수정, 김춘례, 노식래,
이상훈, 한기영, 장인홍,
송재혁, 강동길, 고병국,
김종무, 오현정, 홍성룡,
황인구, 이승미, 김혜련,
김경영, 김경우 의원(20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여성정책은 정치, 인권, 법·제도, 노동, 복지, 건강, 다문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이로 인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내의 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은 서로 분산되고 중첩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2013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여성의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

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여성정책은 정치, 인권, 법·제도, 노동, 복지, 건강, 다문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내의 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은 서로 분산되고 중첩되어 추진되고 있다.
- 그동안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가운데 2013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조성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여성의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실정이다.
- 따라서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구조화 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